

특정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봉화군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7. 3.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 화 군
관 계 부 서 ○ ○ ○ ○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관내 우우면 우우리 00-0번지 일원에 ****
** ***** 조성사업을 '16.12.21. (주)◇◇ 대표 ◇◇ 외 1개사와 도금액
0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6.12.23.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규정에서 정한 규모 내에서 건축하여야 하나 규모를 124㎡ 초과하여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고, 미끄럼 방지시설은 노후도로에서 표면접착력이 떨어져 미끄러울 경우 필요한 시설로서 신설도로에는 불필요 함에도 사업부지 내 신설도로에 설치 공사비 0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최종 마감이 아닌 슬래브부분의 거푸집 사용횟수는 4회가 적정함에도 3회를 반영하였고 원형부분의 사용횟수는 2회가 적정함에도 1회를 반영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음

그 결과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 되었음에도 '17.3.3.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가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 화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 ☆☆☆☆과에서는 2016. 1. 5. ☆☆☆☆☆(주)(대표이사 ★★)와 “○○○ 가설공사” 계약(계약금액 0,000백만원)을 맺어 2016. 1. 11. 착공하여 2017. 7. 3.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보조기충용 혼합골재 등 자재 구매 부적정

아스콘 포장공사에 따른 보조기충 및 동상방지층용 혼합골재는 관급자재로 구매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임에도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 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고,

2. 동상방지층 설치계획 부적정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8)」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8)」에 따르면 ‘흙쌓기 높이가 노상 최종면을 기준으로 2m 이상인 흙쌓기 구간에서는 노상으로의 모관상승에 의한 수분공급이 억제되기 때문에 동상방지층을 생략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공사는 순성토 현장으로서 총연장 200m중 성토고 2.0m미만인 구간이 110m이고 2.0m 이상인 구간이 90m(시점부 20m, 종점부 70m)로 위 지침에 따라 동상방지층 생략이 가능함에도 시공의 편의성 등을 사유로 동상방지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3. 합판거푸집 과다 적용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8)」에 따르면 ‘합판거푸집 3회, 4회의 경우 유로폼 적용성에 대한 비교·검토 후 산출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량공 시공을 위한 거푸집은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유로폼으로 시공함이 적정하고, 실제 시공도 유로폼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과다계상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는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정비사업 외 1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 화 군

관 계 부 서 ♂♂♂ ♂♂과

내 용

☆☆군 ♂♂♂ ♂♂과에서는 2015. 12. 29. ○○○○○○(주)(대표이사 ○○○)와 “♂♂♂ ♂♂♂ 정비사업” 계약(계약금액 0,000백만원)을 맺어 2016. 1. 6. 착공하여 2017. 12. 25.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다음 “○○○사업 계약 현황”과 같이 총 2건의 ○○○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소하천사업 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계약상대자 (대표이사)	계약일자	계약금액	준공(예정)일자	비 고
♂♂♂ ♂♂♂ 정비사업	○○○○○○○(주) (○○○)	2015. 12. 29	0,000	2017. 12. 25	
○○○ ○○○ 정비사업	(주)○○○ (○○○)	2015. 12. 28	0,000	2017. 12. 25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사토운반거리 및 축중기 설치 미정산

본 공사는 총 16,194m³의 사토 현장으로서 사토장까지의 운반거리를 당초 5.0km으로 계획 하였으나 공사중 실제 3.0km로 축소 조정 되었고,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해양부, 2009. 8.17)」 제3조에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m³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계에 축중기 설치를 반영 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필요하고 반영된 축중기를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고,

나. 보조기층용 혼합골재 등 자재 구매 부적정

아스콘 포장공사에 따른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혼합골재는 관급자재로 구매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임에도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 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2. ○○○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보조기층용 혼합골재 등 자재 구매 부적정

아스콘 포장공사에 따른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혼합골재는 관급자재로 구매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임에도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 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고,

나. 사토량 정산 미반영

본 공사 총 사토량 6,599m³중 4,022m³에 대해서는 사토처리 하였으나 2,577m³에 대하여는 실제 현장내 잔토처리 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등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2건의 공사에서는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 화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군 ☆☆☆☆과에서는 “◇◇◇◇ ◇◇◇◇◇◇◇◇ 개발사업”을 2014. 7. 9. ‘◇◇건설(주) ◇◇◇◇’과 계약 하고 2018. 1. 11.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 가물막이 PP마대쌓기 관련

하천을 횡단하는 생활용수 관로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가물막이(13개소)에 필요한 마대쌓기는 단가가 경제적인 톤마대 쌓기(17,662원/m³)를 적용함이 적정한데도, 고가인 PP마대 쌓기(95,959원/m³)로 적용(실제 톤마대 쌓기로 시공)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2. 폐기물 운반 관련

본 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의 처리 및 운반비는 별도 분리 발주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스콘 표층 절삭구간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3,733m³(10개소)에 대하여, 별도 폐아스콘 처리 운반비는 불필요함에도, 도급자 내역에 폐아스콘 처리 운반비를 별도로 반영(중복)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 화 군
 관 계 부 서 ♂ ♂ ♂ ♂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군 ♂ ♂ ♂ ♂ 과에서는 “√√ √√√√√√√√ 정비사업”를 2014. 11. 14. ‘√√건설(주) √√√’와 계약 하고 2017. 12. 3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 교량 아스팔트 방수 관련

본 공사의 하천에 위치한 제00000교 외 5개 교량의 교대(A1, A2) 배면방수에 대한 아스팔트 방수 공법은 단가가 경제적인 솔칠 2회(11,600원/㎡)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고가의 아스팔트 바름(31,715원/㎡)품을 적용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2. 사토 운반거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 안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토사 20,326m³)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는 당초 L=5.0km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처리한 사토의 평균 운반거리는 L=0.625km(감 4.375km)로 공사비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기관 위수탁사업 추진 부적정
(☆☆군 ○○○○○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소 관 청 봉 화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하수도시설 설치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군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 보조사업 대행 위·수탁협약을 맺어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1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과 ↑↑↑↑↑↑은 「○○○○○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하여 2015. 2월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매 회계 연도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발생 이자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다음[표] 위수탁사업 정산 현황과 같이 회계 연도가 끝나면 대행사업기관으로 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

하고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함에도 정산을 미실시하여 발생한 이자 00,000천원을 반납 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위수탁사업 정산 현황

(단위 : 원)

부서	사 업 명	회계연도	사업비	정산유무	미반납 이자	비고
계						
☆☆☆☆과	☆☆군 ○○○○○○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2015		무		
		2016		무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① 대행사업기관으로 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00,000천원은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